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206

발의연월일: 2021. 12. 30.

발 의 자:박 진·조명희·태영호

김석기・김선교・황보승희

김영식 · 강민국 · 이종배

주호영 · 김도읍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주요내용

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. 생체식별정 보는 그 특성상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될 가능성이 있 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전단 중 "제23조제1항제1호"를 "제23조제1항제1호, 제23조의2제1항제1호"로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생체식별정보 처리의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망막·홍 채·지문·성문·손·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 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생체식별정보"라 한 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 - 2. 법령에서 생체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 -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생체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생체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
제39조의8제1항 본문 중 "제23조"를 "제23조, 제23조의2"로 한다. 제39조의1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23조의2제1항제1호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생체식별정보를 수집한 경우

제7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생체식별정보를 처리한 자제73조제1호 중 "제23조제2항"을 "제23조제2항, 제23조의2제2항"으로한다.

제75조제2항제6호 중 "제23조제2항"을 "제23조제2항, 제23조의2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・②	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	③
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	
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	제23조제1항제1호, 제23조의2제
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	<u>1항제1호</u>
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	
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	
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	
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	
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	
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	
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동의	
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	
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	
자가 부담한다.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3조의2(생체식별정보 처리의
	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망
	막·홍채·지문·성문·손·얼굴 등
	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
	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생

체식별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. 법령에서 생체식별정보의 처 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 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생체식별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에는 그 생체식별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통지) ① -----23조, 제23조의2-----

다)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략)

제39조의15(과징금의 부과 등에 지대한 특례)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~ 7. (생 략)4. ~ 7. (*)② ~ 8 (생 략)② ~ 8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제71조(벌칙)

②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15(과징금의 부과 등에
대한 특례) ①
 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23조의2제1항제1호(제3
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
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
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
고 생체식별정보를 수집한 경
<u>\$</u>
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71조(벌칙)
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~ 6. (생략)

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

1의2. ~ 3. (생 략)

제75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
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
여 생체식별정보를 처리한 자
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73조(벌칙)
<u>.</u>
1. 제23조제2항, 제23조의2제2항
1의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.</u>
 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23조제2항</u> , 제23조의2제2항